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초등교육 평준화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년 7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한상천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한상천
건명	초등교육 평준화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0일

## 소개의견

본 청원인 한상천 외 16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회 정기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제 15회 정기회의 및 청소년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초등교육 평준화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사립학교를 필두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 등의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일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의무 수업’ 및 ‘정규 교육과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수업을 의무 수업 및 정규 교육과정의 형태로 강제적으로 운영하면, 학습에만 집중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발달 과업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초적인 태도를 배우고 인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학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발달 과업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기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3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

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신설>

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의무 수업’ 및 ‘정규 교육과정’의 형태 등으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청원서

## 1. 제안이유

현재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정한 시간보다 많이 수업하거나, 초등학교 1-2학년 전체가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에 참여해 사실상 '의무·정규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광주외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생이라는 이른 시기에 학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해당 나이의 발달 과업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의무 수업' 및 '정규 교육과정'의 형태로 시행하지 않는 학교와 학습적인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점은 국가적 정책인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법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제 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3항 3호를 추가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3.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의무 수업' 및 '정규 교육과정'의 형태 등으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문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p> <p>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lt;신설 2016.5.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li> <li>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li> </ol> <p>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6.5.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li> </ol>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p> <p>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lt;신설 2016.5.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li> <li>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li> </ol> <p>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6.5.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li> </ol>

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신설>

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의무 수업’ 및 ‘정규 교육과정’의 형태 등으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청원인 성명 : 한상천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